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그간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1)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권한 중 “미숙아”에 대한 건강관리 추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 규정 삭제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2)
 - 주민자치과 소관업무 중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위촉” 업무 추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권한 중 “자활급여 결정 및 자활사업 위탁의뢰”와 “조건 불이행자 생계급여 중지 결정 및 통지” 규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 급여업무 통합으로 각종 급여의 지급기관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집행”, “노령수당 지급” 및 “모자복지급여비 지급”을 업무를 삭제함
 - 경제과 소관업무 중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농지자경 증명 발급업무에 “금호동과 풍암동” 추가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 그 동안의 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반영하자는 안입니다.

별표1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권한에 미숙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그동안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왔던 모자보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권한을 철회하여 삭제하자는 안으로서, 모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라 판단합니다.

별표2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위임사무명 란에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개정된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따른 것이고, 사회복지과, 청소위생과의 위임사무명 란 및 근거법령 란의 개정사항은 그동안의 법령개정에 따라 법령개정의 사항과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제과의 위임사무명 란의 개정사항은 그동안 조례개정에 따라 분동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